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2025. 9.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1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명: 「경기체육사 편찬사업」 <1년차>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6년 12월(2년간)
-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용역: 90,000,000원(금구천만원)
 - ※2026년 예산 별도 편성예정
 - 1단계(기초조사, 분석, 1차결과(초고) 완성): 2025년 계약일 ~ 2026년 3월말
 - 2단계(내용정리·보완, 최종보고 등): 2026년 4월 ~ 2026년 12월내
- 사업내용: 경기체육사 편찬을 위한 사업 전반
 - 경기체육사 집필 및 위원회 운영, 경기체육사 연구, 콘텐츠 제작, 디지털 플랫폼 개발, 관련 사업 홍보, 경기체육사 출판기념 행사 추진 등
 - ※출판형식: 도서 및 디지털 플랫폼 활용

□ 추진배경 및 방향

- 경기도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관련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 정리 필요
 - ▶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약 『경기체육 역사홍보관 마련 및 체육백서 발간』 추진
- 원로체육인과 언론, 학계 등 스포츠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자문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및 전문용역을 통한 사업추진
 - ▶ 사무처 역할: 역사 조사 및 자료 수집, 위원회 및 연구진 운영, 행정 등
 - ▶ 위원회 역할: 경기체육사 구성 및 기획, 내용 감수 등
 - ▶ 전문용역 역할: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효과적 편찬 업무 추진

○ 주요내용 추진방향(안)

1. 경기체육 역사 조사 및 자료 수집
① 문헌, 기록물, 사진, 영상 등 경기체육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② 유관 기관(대한체육회, 시도 및 시군구 체육단체, 대학, 연구소, 언론사) 협력 ③ 경기 지역 출신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기록 수집
2. 조사자료의 체계적, 효율적 편찬 작업 진행
① 시대별 구분(근·현대) 및 종목별 정리 ② 경기체육 발전·변천사에 대한 객관적 기술 정리 ③ 주요사건, 인물, 정책추진, 제도 사항 정리
3. 체육사 편찬(자문)위원회 및 연구진 운영 지원 ※용역 기획
① 체육사 및 스포츠학 전문가, 언론인, 역사학자, 체육관계 포함 구성운영 ② 학술연구기관 및 체육단체 협력 집필 추진
4. 출판 및 보급
① 경기체육 편찬사 발간(온라인·오프라인) ② 교육 및 홍보용 자료 제작(도민 대상 및 체육기관 활용 자료 배부)

2 과업 개요

○ 과업명: 경기체육사 편찬 조사 연구 용역

○ 목적(배경)

- 경기도는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체육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료 부재
- 민선 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경기도 체육의 역사적 흐름을 체계화하고 본 편찬사업(2026년 완료 목표)의 학술·자료적 기반 마련을 통한 경기체육 발전 지침서 활용을 위함

○ 사업목표

- 경기체육의 역사·인물·사건·시설·행정체계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 경기체육사 편찬을 위한 목차 구성 및 사료 분류기준 수립
- 후속 본사업(2026년 완료) 수행을 위한 연구·데이터베이스 기반 마련

○ 과업기간: 착수일 ~ 2026. 3.31.

- 본 사업은 연차별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2025년 1차 용역(기초조사, 과업 설계, 1차결과 도출) 수행
- 이를 기반으로 한, 보완연구 및 최종편찬 완료는 2026년도 최종 편찬완성
※추후 전년도 동일(유사)사업 수행 실적 보유 시 가점 추가 검토

○ 사업예산: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추진사항

- (과업추진 체계)

구 분	역 할	구 성
담당부서	· 경기체육사 편찬 기본계획 수립 · 자료제공, 검수 등 편찬 제작 지원 · 수행기관 선정 및 자문단 구성 운영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팀
용역 수행기관	· 경기체육사 총괄 기획 마련 · 자료수집, 연구, 집필, 편집, 발간 등 · 1차 결과물에 따른 최종(2026년도) 연계방향 마련 · 편찬위원회(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경기체육사 편찬 방향 제시 - 최종 결과물 검수 등	전담인력, 연구원 *편찬위원회 구성 (언론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6명내외)

- (시간적 범위) 해방 이후 ~ 2025년 현재 ※구체범위 조율
 - 본회 설립, 체육단체 통합, 민선 체육회장 시대 이전·이후의 시기를 중점 구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
 - 인천광역시와 분리되기 이전·이후 구분
- (내용적 범위)
 - 경기체육의 연혁, 도체육회 설립 배경, 성과, 기여 중심의 활동사항
 - 경기도체육회·시군체육회 조직 구축, 변화 및 활동 현황
 - 도·시군 단위 체육조직·정책(정부, 도정)·주요사업 연혁, 중점 사업
 - 국내·외 주요대회 활약상(전국체전, 올림픽 등) 정리
 - 경기도 체육 관련 인물·사건·대회·제도
 - 체육시설·종목 변천사 및 지역별 특이사례 등

○ 주요 과업(사업) 내용

과업	주요내용
기획·진행	· 편찬사 총괄 기획(안) 마련 · 목차, 연표, 면별 구성 및 주요내용 등 편찬사 구성 총괄 · 편찬위원회(자문단) 구성 운영(언론 및 학계 관계자 6명 내외)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현장조사)	· 본회와 협조하여 대내·외 자료 수집, 정리, 분석 ·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관련 인물(원로체육인 등) 인터뷰 및 취재 · 주요 체육인·은퇴선수·행정가 대상 인터뷰 · 편찬 및 수집 자료의 지속 활용을 위한 목록화 · 시사(市史), 경기도·시군 연보 등 공공간행물 분석 · 체육회·종목단체·언론사·대학 체육학과 자료 수집 · 도·시군 체육회·유관단체 현장 방문 · 녹취·기록지 작성, 저작권·초상권 등의 확보 · 타 지자체·공공기관 유사 편찬사업 사례 조사
사진 구성·기획 및 촬영	· 경기체육에 관련된 사진 구성과 기획(사진 소개 포함) · 제작 필요 사진 촬영,
원고 집필 교정·교열	· 주요 인물 프로필(이력·공적) 정리 · 사건·대회 중심으로 지역·종목별 연표화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작가의 원고 집필 · 사료 분류체계 및 집필방향 서술지침 · 전문인력(연구원 등)을 활용한 모든 수록 원고의 운문, 교정, 교열
편집 · 디자인	· 제작 목적과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편집, 디자인 기획 진행 · 표지, 화보, 내지 등 편집디자인 구성 · 이미지, 일러스트, 도표, 그래프, 캘리그래피, 다이어그램 등 시각화를 위한 디자인 작업 및 편집
인쇄 및 제본	· 인쇄감리용 가인쇄, 제본감리용 가제본 · 제본 감리용 가제본(양장제본, 케이스 등)
발송 및 납품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이미지 및 텍스트 결과물 납품 · 이미지 원본, 텍스트는 아래한글 또는 ms문서 파일 · 책과 동일한 PDF 파일
기타	· 자문단(위원회) 및 본회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최종보고회(성과제출 후 자문단 검토) ※필요시 수시보고회 운영 · 본회 편찬자문단(위원회) 요구사항 지원 · 수시 협업을 통한 방향성 조율 및 수정·보완, 하자 유지보수 등

○ 과업(성과)의 활용

- 본 1차 용역 결과물은 2차(2026년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 기관의 역사와 위상을 온·오프라인으로 종합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
- 디지털 기반의 확산 채널을 통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 전략적 홍보 강화
- 경기체육인 및 기관 구성원들과의 정체성 공유 및 소속감 제고
- 경기체육인 및 기관 구성원들과의 정체성 공유 및 소속감 제고
- 홍보용 티저 영상 등 별도 시각 홍보물을 제작하여 내외부 행사 및 언론 대응, SNS 콘텐츠, 기념행사, 기관 홍보자료 등으로 연계 활용
- 향후 디지털 아카이빙 자산으로 장기적 활용 기반 마련

○ 과업 수행 절차 및 일정

단계	주요내용	일정(안)	비고
착수	계약 체결, 착수보고회, 전담인력 배치 등	2025년 10월	
위원회 (자문단)구성	경기체육사 편찬 방향 제시 전문가 구성	2025년 10월중	
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구술채록·인터뷰	2025년 11월 ~ 12월	
분석·집필	연혁 및 이력 정리, 연표화, 교정, 교열	2025년 12월~ 2026년 1월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제출(초고완성), 자문회의 개최	2026년 1월~2월	
결과보고(1차)	결과(1차) 보고서 제출, 보고회	2026년 2월말	
성과물 납품	책자 및 전자책(e-book) 발간	2026년 3월중	초고

○ 결과물 제출

가. 성과품 목록

구분	수량	규격	비고
착수보고서	20부	A4 제본	제안서 제출자료 활용
중간보고서	30부	A4 제본	중간보고서 요약본 30부 별도 제작
1차 결과보고서	50부	A4 제본	1차 결과보고서 50부 별도 제작
결과물	300부내외	중간보고를 통한 추후 협의	편찬사 300부내외 전자책(e-book)
그 외 성과산출물	3개	PDF 외장하드 등	최종용역결과 및 홍보(행사) 자료 등

- ※ 모든 성과품은 그 내용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 과업 최종 성과품은 저작권 등의 사전 검토 승인을 득한 후 제출
- ※ 제작사양은 상호 협의 후 조정

1. 기본 원칙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본회 및 편찬위원회(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용역과업지시서 외에 관계법령 및 규정, 정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정과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행과정 중 모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관계기관과의 협의

-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추가사항이나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히,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토 및 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시로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한 이견 발생시에는 의견 일치를 위해 발주기관과 최선의 협의를 노력해야 함

3. 성과품 인쇄 및 납품조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수록내용,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부터 성과품 납품까지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 중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최신기법을 사용해 과업을 수행하되, 이론적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최종보고서에는 외부 자문단(법률, 회계, 조직, 경영, 스포츠 등)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이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 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통보 및 승인 받아야하며 교체 인원은 동등한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이어야 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해야 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 중 용역의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연구 조사 내용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결과가 이론에만 치우쳐 추상적이거나 이상향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문마다 실정에 맞고 실용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여야 함
- 본 연구조사 내용은 경기도체육회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재, 언론기관 보도 등 공개 발표할 수 없음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대비 공정이 현저히 미달하여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미이행 또는 지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6. 특허권의 사용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짐

7. 과업보완 등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보완하여 제출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 된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의 청구 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 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9.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자료와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하며,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는 책임을 져야 함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행정기관 통계자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신 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 에 대한 출처 및 이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 시 계약상대 자는 조속히 제공

10. 보완 관련

- 계약상대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 생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 대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11. 기타 사항

- 과업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 원활한 과업수행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 함
- 본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예정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